



“개인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 실무 Q&A”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조합수와 결성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 실무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시는 주제들에 대하여 Q&A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궁금점을 설명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은 2001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조합수와 결성액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017년부터 창업기획자의 조합 결성이 허용되면서 법인 결성 조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과 2018년부터 개인투자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게 된 것, 그리고 최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벤처투자법이 2020. 8. 12.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요건이 완화된 것이 결합되어 나타난 효과로 판단됩니다.

2.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창업기획자 외 일반 주식회사나 벤처캐피탈로 불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주식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고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 목적의 필수로 하고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결성액 30% 미만)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이 2018년 전에는 1500만원 이하에 한해 100%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조특법 개정으로 100% 소득공제 구간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비율로 소득공제가 되며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가능한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투자사는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000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TBC 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입니다.

4.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이 피투자회사 자본금 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피투자기업은 벤처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회사 자본금 100분의 10 기준은 개인투자조합 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투자조합 등록 조건과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1)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 조합원수 49인 이하, 4)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5% 이상, 5) 존속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출자총액이 10억원(20억원으로 완화 검토) 이상인 경우 신탁계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6. 개인투자조합의 책임과 의무로서 유의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는 조합 등록 취소 사유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주요출자자(출자 10% 이상)와 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없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7. 2020. 8. 12. 제정 벤처투자법 상 투자 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법 상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였고 창업기획자가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제정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투자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장회사에는 투자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10% 비율 이하로는 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한 외의 금액은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금 규모가 큰 경우 벤처투자조합화 될 수 있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 창투사, 1인 창투사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 외 기타 세제 혜택이나 유의할 사항은 없는가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CONTACT



권단 파트너 변호사

02-6952-2616

dan.kwon@dkl.partners



DKL PARTNERS

(0624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701호, 1706호(역삼동, 미왕빌딩)
T. 02-6952-2615 | F. 02-6918-0832 | <https://www.dkl.partners>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
너스 법률사무소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